(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단, 신규지정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그 결과가 ‘보통’ 또는 ‘완료’ 이상인 것에 한함)
2.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중견·중소기업 제품
3.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에너지 공공기관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되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제품

4. 기타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제품 등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제품

②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③ “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2.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④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신청 제품에 대한 공공성·혁신성평가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⑤ “조달의 적합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2.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

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3.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⑥ “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조달사업법」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⑦ “공공수요발굴위원회”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⑧ “혁신장터”란 「조달사업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제2장 혁신제품 평가기관 및 위원회 구성

제3조(혁신제품 평가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분되며,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공공성 평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혁신성 평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평가제도 공고(우대기준 포함), 신청서류의 접수, 검토 및 보완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혁신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기준 검토

8.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적정성 검토

9. 혁신제품 규격추가·변경 및 평가

10.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평가기관의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운영절차 및 방안

3. 평가위원회, 추가등록평가위원회 운영실적

4. 기타 기술의 혁신성 평가 및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운영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평가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자문·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실적 및 당해연도 운영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기술(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분

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제12조의 혁신제품 지정에 위한 공공성·혁신성 평가
2. 제12조의 현장조사에 대한 평가
3. 제13조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평가
4. 제16조의2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
5. 제21조의 지정취소에 대한 평가

② 평가위는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평가위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수요기관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거나 현장중심 성능검토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기타 평가위원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이하 "추가등록평가위"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 추가등록평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절차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4조내지 제5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평가위 또는 추가등록평가위가 평가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평가위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내지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3장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 절차

제8조(혁신제품 지정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지정분야, 지정대상, 신청자격,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대상) 혁신제품 지정 대상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10조(신청) 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5. 기타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조달사업법, 조달사업법 시행령,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조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신청자는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하 '특허 등')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

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혁신제품평가에서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제16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심의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특허 등의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이거나 제5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경우 동일 특허 등에 복수의 권리자가 있을 경우 약정서[별지 제3호의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신청자는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이하 "우수조달물품 등"이라 한다.)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세부품명번호 동일)이라도 새로운 적용기술이 추가되거나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지정 또는 계약 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4호의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함께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신청제품이라도 제12조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 대상에는 포함하고, 혁신제품 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전검토) ① 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청된 서류의 구비요건, 신청자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혁신제품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사전검토에서 탈락한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평가) ① 제10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에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는 공고에 포함된 공모분야 또는 상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성평가를 먼저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③ 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평가는 항목별 심사 합산점수가 75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에 따른 심사대상이 된다.

④ 현장평가는 제3항의 평가를 통과한 대상에 한해 필요시 실시하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부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성공판정을 받고 제3항에 따른 공공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2. 국가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연구개발사업의 성

과물 중 제23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으로 제3항에 따른 공공성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⑦ 평가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위원장은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결과와 주요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에 명시해야 한다.

⑨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종전 평가에서 공공성 심사를 통과했으나 혁신성 심사를 탈락한 경우에는 공공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⑩ 신청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일 경우 혁신제품 평가에서 기 지정되거나 계약된 규격을 참고할 수 있다.

⑪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 신청자가 통보받은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문서로써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조달적합성 검토) ① 평가기관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평가위의 평가 결과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의 평가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품의 조달적합성을 검토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이를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예정 공고 등) ① 평가기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의 평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를 20일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심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에서 “공공성 및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된 대상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안건을 심의한다.

③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신청자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소유자가 연장신청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는 제1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연장신청서의 내용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지정기간을 연장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평가위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의 장은 지정기간 연장에 따른 판정이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첨부한 판정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으며, 혁신제품의 연장되는 지정기간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⑧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주요내용을 평가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 및 지정 제외)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따른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의견제출 등 그 이전 단계에서 해당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혁신제품평가대상, 심사대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5.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6.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으로 4회 이상 혁신제품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7. 제9조에 의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밖에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18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 평가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시 평가위를 거쳐 재발급 할 수 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4. 그 밖에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9조(등록) 평가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 등록업체 정보
2. 제품 규격서
3. 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4. 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20조(추가등록)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12조제12항의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이나 구성품이 추가・변경되거나 핵심성능이 아닌 부가성능이 추가・변

경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규격 추가·변경 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추가·변경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평가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규격 추가 평가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결과를 확정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추가등록 평가 절차에 따라 등록된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 해당 혁신제품의 최초 지정 유효기간에 따른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확정 되는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절차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심의가 완료되어 규격 추가·변경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되고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 결과 조달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으로 규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⑥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변경 사항에 대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규격 추가·변경”으로 “제품 규격서”는 “추가·변경 된 제품 규격서”로 본다.

제21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건 중 해당 과제가 제재처분 대상이 될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수행 등)에는 제재처분 확인 시점에서 과제 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취소를 논의할 수 있다.
2.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지정기업에서 혁신제품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내지 제11항에 따른다.

제22조(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2. 혁신제품의 생산·판매 실적
3. 혁신제품에 대한 인정성·품질평가
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7호의 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 보고서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

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12월 중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해의 보고의무를 면제한다.

제23조(기관간 협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혁신제품의 추천과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의 수행, 홍보 등의 업무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에너지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4장 보칙

제24조(포상) ① 매년 혁신조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기관 담당자,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평가기관이 산업통상부에 추천한다.

제25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혁신제품 평가기준

1. 공공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 배점	판정
공공 적합성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국민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여부 - 환경 보호·신산업 육성·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 여부	적합 여부	
	공공구매의 필요성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 여부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 -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	적합 여부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 여부 - 유사기능 제품이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구매 유인이 낮지 않은지 등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제품 및 제공 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 - 사용처·구매기관이 특정 가능한지 등 구매 가능성 - 그 외 정책적·전략적 필요에 따른 구매 가능성	적합 여부	
개발 완성 수준	TRL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여부	적합 여부	
	안전성	현장 적용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적합 여부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적합 여부	

2. 혁신성 평가

<table>
<tr><th colspan="3">1 혁신적합성(60점)</th></tr>
<tr><th>평가항목</th><th>세부 내용</th><th>평점</th></tr>
<tr><td>제품의
신규성
(20점)</td><td>▪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임
Ⓑ 해당 제품·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제품·서비스임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으나 새로운 제품은 아님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
<table><tr><td>등급</td><td>Ⓐ</td><td>Ⓑ</td><td>Ⓒ</td><td>Ⓓ</td></tr><tr><td>배점</td><td>20</td><td>16</td><td>8</td><td>4</td></tr></table></td><td></td></tr>
<tr><td>제품의
탁월성
(20점)</td><td>▪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되었거나 또는 월등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이거나 또는 상당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이거나 또는 개선 효과가 기존 제품 대비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이거나 또는 개선 효과가 기존 제품 대비 거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table><tr><td>등급</td><td>Ⓐ</td><td>Ⓑ</td><td>Ⓒ</td><td>Ⓓ</td></tr><tr><td>배점</td><td>20</td><td>16</td><td>8</td><td>4</td></tr></table></td><td></td></tr>
<tr><td>기술적
완성도
(10점)</td><td>▪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 ·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적 완성도, 신뢰성 수준을 확인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 ·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과 신뢰성 수준이 높음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 ·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지만, 신뢰성 수준이 높음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 ·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 ·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table><tr><td>등급</td><td>Ⓐ</td><td>Ⓑ</td><td>Ⓒ</td><td>Ⓓ</td></tr><tr><td>배점</td><td>10</td><td>8</td><td>4</td><td>2</td></tr></table></td><td></td></tr>
<tr><td>실현가능성
(10점)</td><td>▪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
<table><tr><td>등급</td><td>Ⓐ</td><td>Ⓑ</td><td>Ⓒ</td><td>Ⓓ</td></tr><tr><td>배점</td><td>10</td><td>8</td><td>4</td><td>2</td></tr></table></td><td></td></tr>
</table>

2 시장성(40점)

<table>
<tr><th>평가항목</th><th>세부 내용</th><th>평점</th></tr>
<tr><td>시장규모
(20점)</td><td>▪ 해당 제품·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 해당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table>
<tr><td>등급</td><td>Ⓐ</td><td>Ⓑ</td><td>Ⓒ</td><td>Ⓓ</td></tr>
<tr><td>배점</td><td>20</td><td>16</td><td>8</td><td>4</td></tr>
</table></td><td></td></tr>
<tr><td>파급성
(20점)</td><td>▪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해당 제품·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table>
<tr><td>등급</td><td>Ⓐ</td><td>Ⓑ</td><td>Ⓒ</td><td>Ⓓ</td></tr>
<tr><td>배점</td><td>20</td><td>16</td><td>8</td><td>4</td></tr>
</table></td><td></td></tr>
</table>

[별지 제1호 서식]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신청자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혁신제품	‣ 혁신제품명 :	
	※ 목록정보시스템(www.g2b.go.kr:8053) - 지능형검색 - 상세검색 조회 후 예시와 같이 작성	
	기술구분	[ ] ①전기/자율차 ②IoT가전 ③바이오헬스 ④에너지신산업 ⑤반도체/디스플레이 ⑥기타( ) ※ 기술분야가 유사한 항목으로 반드시 기재(2개 이상 분야 해당 시 모두 선택하여 기재)
	신청자격	[ ]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00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제품 보유기업 [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마켓 공공기관 에너지 협의체를 통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기업
	유형	[ ] 국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제품 개요 (4줄 이내)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제조 여부
예시	PLS-250R	39111611	25269504	투광조명	3911161106	PLS투광 등기구	O
1							
2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혁신제품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신청자격 증빙서류 2. 혁신제품 설명서 3. 제품 규격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5. 기타 기술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혁신제품 설명서

1. 개발제품 핵심내용

가. 참여 연구개발사업 주요내용

사업명				
내역사업명				
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연구기관 (협동・공동・위탁)	참여형태	기관명	책임자 성명	직급
총 연구기간	20XX. X. X. ~ 20XX. X. X.			
연구내용 요약	* 3~4줄로 주요 연구내용 기술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1차년도(20XX)			
2차년도(20XX)			
3차년도(20XX)			
합계			

나. 제품 주요내용 및 특징

※ 목록정보시스템(www.g2b.go.kr:8053) - 지능형검색 - 상세검색 조회 후 예시와 같이 작성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제조 여부
예시	PLS-250R	39111611	25269504	투광조명	3911161106	PLS투광등기구	O
1							
2							
3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내용 위주로 서술

다.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기존기술의 문제점 및 기존기술과의 차별성을 포함하여 신청기술이 우수한 사유를 포함하여 서술

* 핵심요소 기술별 주요내용과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및 우수성에 대해 서술

라. 적용제품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신청제품의 적용 산업분야에 대해 해당제품의 적용 시 기대되는 성능 및 기능 향상 내용 서술

* 핵심요소의 해당산업 분야 제품 적용 시 기존 기술・제품보다 나은 기능 및 성능 향상 측면에서 서술

2. 기술의 혁신성

가.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해당하는 내용 기술)

1.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 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2. 공공구매 필요성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3. 현안의 시급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4.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5. 수요기관(구매 예상 기관) 리스트

연번	수요기관명 (부서명)	적용 가능 모델명	구매 확약 여부 (확약일 기재 및 증빙 별첨)	
1	ㅇㅇㅇㅇ진흥원(ㅇㅇㅇㅇ실)		O	2023.12.15.
2	ㅇㅇㅇㅇ공사(ㅇㅇㅇ구매팀)		O	2024.02.02
3	ㅇㅇㅇㅇ공사(ㅇㅇㅇㅇ팀)		X	-

※ 수요기관명 및 적용 가능 모델명 필수 기재

※ 구매 확약은 필수 이행 사항이 아니며, 해당 제품의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보조자료에 불과함

나. 시장성

(해당하는 내용 기술)

1. 시장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2. 타 산업 파급성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다. 혁신성

(해당하는 내용 기술)

1. 기술・제품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2. 기술・제품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3.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4. 제품에 적용된 신기술에 대한 규제 사항 검토

◦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국내 규제 적용 가능성(사례 및 자체 검토 의견 제시)

3. 개발자원 투입 및 개발방법

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

신청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연구개발비용과 기간을 기재

연구개발기간은 기술개발 완료단계까지의 기간을 말함

나. 기술개발방법

개발기술이 신청기업 자체개발인지 그 이외의 방법인지를 표기

* 자체개발 이외의 방법으로 개발된 경우 대상기관명과 기관별 소요비용을 서술
* 자체개발 이외의 경우 대상기관과 맺은 계약서나 협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
*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신청기술・제품과의 관계 등을 기재

다.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의 경우 기관별(또는 방법별)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

공동개발 또는 위탁개발인 경우 각각의 담당부문 및 개발내용을 요약하여 서술

기술도입 또는 용역도입을 한 경우 그 내용과 신청기술과의 관계를 요약하여 서술

* 해당하는 경우만 기입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함

4.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가. 신청제품에 직접 해당되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

신청제품의 기술개발자(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자료현황을 서술

* 신청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등의 핵심내용만을 서술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예시: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특허제목, 특허등록(출원)일 등 내용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 또는 다수에게 허여 되어 있는바, 00부 혁신제품 지정에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 정 인

주 소 : _____

업체명(성명) : _____ (인)

주 소 : _____

업체명(성명) : _____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성능 비교표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혁 신 명			
구 분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또는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및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신청 제품	
세부 품명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 번호			
특허(실용신안) 번호			
적용기술 (특허 공보 반영 내용)			
제품특징 및 기능			
주요구성			
용도			
이미지			

※ 제출 서류 :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또는 우수조달물품, 우수공동상표 물품 및 다수공급자 계약물품 규격서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혁신제품 평가서(위원별)

1. 공공성 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기준	평가배점	판정
공공 적합성	분야적합성	제안 분야에 적합한 솔루션인지 여부	적합여부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국민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여부 - 환경 보호 · 신산업 육성 · 국민안전 제고 등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하는지 여부	적합 여부	
	공공구매의 필요성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 여부 -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제품 -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구매 활용 필요 - 민간 구매가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 구매 필요성	적합여부	
	수요기관 구매 적합성	해당제품·서비스의 수요기관 구매 가능 여부 - 유사기능 제품이 이미 시장에 다수 존재하여 구매 유인이 낮지 않은지 등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 기존제품 및 제공 서비스 대비 가격의 적정성 - 사용처·구매기관이 특정 가능한지 등 구매 가능성 - 그 외 정책적·전략적 필요에 따른 구매 가능성	적합여부	
개발 완성 수준	TRL	기술완성수준 판단, 평가기관 검증 여부	적합여부	
	안전성	현장 적용시 안전, 위생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	적합 여부	
	규제	첨단 기술에 대한 규제 적용 가능성	적합 여부	

<table>
<tr><td rowspan="2">종
합
의
견</td><td colspan="2">※작성방법※
- 제안제품의 공공성 평가사항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규격서, 제안서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추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에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td></tr>
<tr><td colspan="2"></td></tr>
<tr><td>평
가
결
과</td><td>적합 여부</td><td></td></tr>
</table>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2. 혁신성 평가

<table>
<tr><td colspan="3">1 혁신적합성(60점)</td></tr>
<tr><td>평가항목</td><td>세부 내용</td><td>평점</td></tr>
<tr><td>제품의
신규성
(20점)</td><td>▪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를 확인
Ⓐ 해당 제품 · 서비스는 기존에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제품 · 서비스임
Ⓑ 해당 제품 • 서비스는 기존 제품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을 융합하여 만들어진 제품 • 서비스임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 • 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일부 있으나 새로운 제품은 아님
Ⓓ 기존에 존재하던 제품 • 서비스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의 반영이 거의 없음
<table><tr><td>등급</td><td>Ⓐ</td><td>Ⓑ</td><td>Ⓒ</td><td>Ⓓ</td></tr><tr><td>배점</td><td>20</td><td>16</td><td>8</td><td>4</td></tr></table></td><td></td></tr>
<tr><td>제품의
탁월성
(20점)</td><td>▪ 기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혁신기술/주요 개량기술/보통 계량기술)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 해당 제품 · 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에 비해 월등한 혁신기술이 적용되었거나 또는 월등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 · 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했으나 핵심기술이 개량되어 차이를 보이거나 또는 상당한 개선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 · 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큰 차이가 없는 기술이거나 또는 개선 효과가 기존 제품 대비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 · 서비스는 개발과정에 사용된 기술이 기 존재하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부 개량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기술이거나 또는 개선 효과가 기존 제품 대비 거의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table><tr><td>등급</td><td>Ⓐ</td><td>Ⓑ</td><td>Ⓒ</td><td>Ⓓ</td></tr><tr><td>배점</td><td>20</td><td>16</td><td>8</td><td>4</td></tr></table></td><td></td></tr>
<tr><td>기술적
완성도
(10점)</td><td>▪ 기 확보한 보유기술의 수준과 제안 제품 •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 수준의 차이에 대한 확인을 통한 기술적 완성도, 신뢰성 수준을 확인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 ·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과 신뢰성 수준이 높음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 ·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이 필요하지만, 신뢰성 수준이 높음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 ·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이가 크지 않아 기술의 완성가능성이 높지만,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 현 보유기술과 제안 제품 · 서비스에 적용된 기술의 차이가 다소 있어 추가개발을 통한 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table><tr><td>등급</td><td>Ⓐ</td><td>Ⓑ</td><td>Ⓒ</td><td>Ⓓ</td></tr><tr><td>배점</td><td>10</td><td>8</td><td>4</td><td>2</td></tr></table></td><td></td></tr>
<tr><td>실현가능성
(10점)</td><td>▪ 신기술 적용 제품 · 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확인
Ⓐ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긍정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음
Ⓒ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사업화를 위한 외부 환경이 부정적으로 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필요
<table><tr><td>등급</td><td>Ⓐ</td><td>Ⓑ</td><td>Ⓒ</td><td>Ⓓ</td></tr><tr><td>배점</td><td>10</td><td>8</td><td>4</td><td>2</td></tr></table></td><td></td></tr>
</table>

2 시장성(40점)		
평가항목	세부 내용	평점
시장규모 (20점)	▪ 해당 제품 · 서비스가 창출할 신규 시장 또는 기존시장 및 해외시장에 새롭게 차지할 시장 점유율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해당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높음 Ⓒ 해당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 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보통임 Ⓓ 해당 제품・서비스를 통해 예상되는 신규시장의 창출가능성 또는 기존 시장 및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보 가능성이 매우 낮음 등급: Ⓐ / Ⓑ / Ⓒ / Ⓓ 배점: 20 / 16 / 8 / 4	
파급성 (20점)	▪ 관련 기술・제품이 타 공공부분으로의 적용가능성, 유사산업 또는 타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확인 Ⓐ 해당 제품 · 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해당 제품 · 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높지만,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은 낮음 Ⓒ 해당 제품 · 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지만, 민간으로 파급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음 Ⓓ 해당 제품 · 서비스가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장되어 구매될 가능성이 낮으며, 해당 부분의 민간시장이 없거나 작아서 민간으로의 파급성도 낮음 등급: Ⓐ / Ⓑ / Ⓒ / Ⓓ 배점: 20 / 16 / 8 / 4	

종합의견	※작성방법※ - 제안제품의 공공성 평가사항에 대한 종합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 - 규격서, 제안서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거나 추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그 밖에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에 적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	
평가결과	종합점수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신청인	
제품명칭	

1. 평가 결과

1-1 공공성 평가

평가항목	평가위원 평가 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평균
공공적합성											
개발완성수준											
종합											

1-2 혁신성 평가

평가항목(만점)	평가위원 평가 결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평균
혁신적합성(60)											
시장성(40)											
합계(100)											

※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2. 평가 의견 종합

종합점수	/ 100	평가결과 종합	[ ] 혁신제품 지정 [ ] 탈락
종합의견	구분	주요내용	
	공공성		
	혁신성		

년 월 일

평가위원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 서식]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주관 부처		
신청 기업 (기관 작성)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혁신제품 현황 (기관작성)	등록 정보	‣ 혁신제품명 : ※ 목록정보시스템(www.g2b.go.kr:8053) - 지능형검색 - 상세검색 조회 후 예시와 같이 작성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예시	PLS-250R	39111611	25269504	투광조명	3911161106	PLS투광등기구
1						
2						
3						

	용 도	‣
	기 능	‣
	인 증	‣ 기술인증 : 특허, NEP 등 ‣ 품질인증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 법적의무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수도법 등

검토의견	

[별지 제8호 서식]

혁신제품 현장 조사표

신청자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대표자	
신청제품	혁신제품명	
종업원수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보유여부 등 작성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평가 항목	평가 의견
1. 제품의 확인 ◦ 신청자가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2. 연구개발기술 적용여부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이 적용되었는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5. 기타 확인 사항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여부 등 ※ 제품 규격서,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종합의견	

조사 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별지 제9호 서식]

혁신제품 평가 이의신청서

신청자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제품 명칭		

이의신청 사유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3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붙임 서류	

[별지 제10호 서식]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 이의신청서

신청자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제품 명칭		

이의신청 사유	※ 이의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

붙임 서류	

[별지 제11호 서식]

혁신제품 규격 (추가·변경) 신청서

신청자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규격추가

혁신제품명 :

※ 목록정보시스템(www.g2b.go.kr:8053) - 지능형검색 - 상세검색 조회 후 예시와 같이 작성

구분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예시	PLS-250R	39111611	25269504	투광조명	3911161106	PLS투광등기구
1						
2						
3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구분	종류	만료기간	관련법령
1			
2			
3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의무이행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 으로 기재 후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주요내용

※ 제품구성 추가 변경사항 기재

규격변경

혁신제품명 :

인증번호 :

①구분	②제품규격 비교		③비고
	기존	변경사항	

※ 작성 안내사항

(①구분) 변경사항이 포함된 규격서 조항명 작성

(②제품규격 비교) 변경사항에 대한 비교표 작성

(③비고) 변경요청 사유 작성(1~4 中 해당 사유 번호 기입)

1. 단순오기 등 규격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2. 관련 공인 품질기준 등의 변경에 따라 변경내용 반영이 필요한 경우
3. 성능 보완 등을 통해 기 등록 규격을 상향된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핵심기술과 관련 없는 부품의 단종,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전환, 외주구매에서 직접생산 전환 등에 대해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혁신제품 규격 (추가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규격추가) 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사본 2. 추가지정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3. 제품규격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자기점검표 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5. 직접생산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시 제출) (규격변경) 1. 제품규격서 비교표 2. 변경 전 제품규격서 3. 변경 후 제품규격서
평가기관 확인사항	1.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평가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혁신제품 추가등록 평가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생산공장 소재지)	
혁신제품명		

평가 항목	평가 의견
1. 제품의 확인 ◦ 신청인이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가?	
2. 연구개발기술 적용여부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이 적용되었는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인이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5. 추가등록 확인사항(해당 번호 기입) ① 인증범위 확대, ② 인증범위내 모델 및 물품 추가, ③ 인증명칭 또는 범위 변경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보유여부 등 작성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현장평가 종합의견	1. 서류평가 필요 여부 (※ 5번 항목 ①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로 기입) [ ] 필요 [ ] 불필요
	2. 판정 근거 ※ 핵심성능 유지되고 있는지(인증범위 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의견 작성
	3. 현장평가 종합 판정 [ ] 통과 [ ] 보류 [ ] 탈락

년 월 일

평가위원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3호 서식]

인증번호 제 - 호

발급기관명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01 기 업 명

추진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참여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혁신제품 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추진기업에게 있음

02 주 소

03 혁신제품명

04 지 정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제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 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직인

발 급 기 관 장

인증번호 제 - 호

발급기관명

제품인증 대상 규격

연번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8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	등록일	비고

혁신제품

[별지 제14호 서식]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신청서

신청인	이름(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혁신제품	구분	한글명	영문명	비고
	제품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신청사유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혁신제품 지정 국문인증서 사본 1부

[별지 제15호 서식]

Certificate No.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

01 **COMPANY**

Business Registration No. - -

02 **ADDRESS**

03 **PRODUCT**

04 **PERIOD** **From** **to**

The above product is certified as the Innovative Produc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of Article 33(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and Article 10(1) of REGULATION ON DESIGNATION OF THE INNOVATIVE PRODUCT AND PROMOTION OF PURCHASE.

Designated Date Signature

Name
Title

Official Seal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
Republic of Korea

Certificate No. -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PRODUCT CERTIFICATION SPECIFICATION

No.	Model	Product Classification Code (8 digits)	Product Identification Code (8 digits)	Date of Registration	Remarks

K-INNOVATIVE PRODUCT

[별지 제16호 서식]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신청서

<table>
<tr><td>혁신제품명</td><td colspan="5"></td></tr>
<tr><td>혁신제품
지정번호</td><td colspan="2"></td><td>혁신제품
지정기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회사개요</td><td>회사명</td><td colspan="2"></td><td>법인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행 정
담당자</td><td>직위/성명</td><td></td><td>부 서 명</td><td></td></tr>
<tr><td>전화번호</td><td></td><td>FAX번호</td><td></td></tr>
<tr><td>신청자격
확인</td><td colspan="5">전체 항목의 해당 또는 비해당에 '√' 체크 할 것(필수)
<table>
<tr><th>번호</th><th>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th><th>해당</th><th>비해당</th></tr>
<tr><td>1</td><td>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td><td>( )</td><td>( )</td></tr>
<tr><td>2</td><td>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td><td>( )</td><td>( )</td></tr>
<tr><td>3</td><td>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td><td>( )</td><td>( )</td></tr>
<tr><td>4</td><td>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td><td>( )</td><td>( )</td></tr>
</table>
전체 항목의 해당 또는 비해당에 '√' 체크 할 것(필수)
<table>
<tr><th>번호</th><th>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th><th>해당</th><th>비해당</th></tr>
<tr><td>1</td><td>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 규격서에 기재된 '<u>혁신제품 관련 특허번호</u>' 기재
:</td><td>( )</td><td>( )</td></tr>
<tr><td>2</td><td>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td><td>( )</td><td>( )</td></tr>
<tr><td>3</td><td>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과 동일품목·동일기술)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일부만 중복되는 경우도 제외)</td><td>( )</td><td>( )</td></tr>
</table></td></tr>
</table>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 하

혁신제품 지정기간(2차) 연장 신청서

<table>
<tr><td>혁신제품명</td><td colspan="5"></td></tr>
<tr><td>혁신제품
지정번호</td><td colspan="2"></td><td>혁신제품
지정기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회사개요</td><td>회사명</td><td colspan="2"></td><td>사업자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행 정
담당자</td><td>직위/성명</td><td></td><td>부 서 명</td><td></td></tr>
<tr><td>전화번호</td><td></td><td>FAX번호</td><td></td></tr>
<tr><td>기간연장
신청사유</td><td colspan="5">아래 4가지 항목의 해당 또는 비해당에 '√' 체크 할 것 (필수)
<table>
<tr><th>번호</th><th>지정기간 연장 '신청' 사유</th><th>해당</th><th>비해당</th></tr>
<tr><td>1</td><td>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td><td>( )</td><td>( )</td></tr>
<tr><td>2</td><td>1차 연장기간(1년) 동안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td><td>( )</td><td>( )</td></tr>
<tr><td>3</td><td>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td><td>( )</td><td>( )</td></tr>
<tr><td>4</td><td>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에 해당</td><td>( )</td><td>( )</td></tr>
</table></td></tr>
<tr><td>기간연장
제외여부</td><td colspan="5">아래 3가지 항목의 해당 또는 비해당에 '√' 체크 할 것 (필수)
<table>
<tr><th>번호</th><th>지정기간 연장 '제외' 사유</th><th>해당</th><th>비해당</th></tr>
<tr><td>1</td><td>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 혁신제품 규격서에 기재된 '<u>혁신제품 관련 특허번호</u>' 기재
:</td><td>( )</td><td>( )</td></tr>
<tr><td>2</td><td>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신청마감일 기준)</td><td>( )</td><td>( )</td></tr>
<tr><td>3</td><td>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과 동일품목·동일기술)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일부만 중복되는 경우도 제외)</td><td>( )</td><td>( )</td></tr>
</table></td></tr>
</table>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 하

[별지 제17호 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 보고서

기관 현황	기관명		대표자	
	업종		규모	[ ] 중소 [ ] 기타
	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작성자	소속: 성명/직위:	연락처: ( ) -	

혁신제품 지정 인증 사용 및 제품판매 실적

제품판매실적	국내/외 판매	국 내		수 출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국가명	
		억원	억원	백만$	백만$		
	국내판매 금액 중 수의계약 매출금액	중앙정부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계약명 1. _____(성공[ ] 실패[ ]) 2. _____(성공[ ] 실패[ ])				
		지방 자치단체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계약명 1. _____(성공[ ] 실패[ ]) 2. _____(성공[ ] 실패[ ])				
		기타 공공기관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건수 : 건				
			입찰・계약명 1. _____(성공[ ] 실패[ ]) 2. _____(성공[ ] 실패[ ])				
	기타	기타판매실적					
기타 의견		※ 상세 내역은 별지 첨부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사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귀하